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 적용 대상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포함〉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44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6. 3. 20.

다.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 헌장은 前文에서 평화·안보, 인권, 개발을 유엔의 3대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5조 및 제56조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표적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법(Magnitsky law)’ 또는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

ctions Regime)’를 제정하였음.

그런데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이 가능하여(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우리 우방국 정부의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명 변경,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4조제1항 개정).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u>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u>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u>결의</u>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 ----- <u>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u> ----- ----- ----- ----- ----- -- <u>결의, 국제연합 회원국이자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u> -- -----.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중대한 인권침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 <u>가. 세계인권선언</u> <u>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 <u>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 <u>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u>

4. (생략)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행위</u> 또는 대량살	<u>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u> <u>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u> <u>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 <u>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 <u>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u> <u>차.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u> <u>카.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협약 및 그에 대한 1977년 6월 8일자 2개 추가의정서</u> <u>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u> <u>파. 2000년 11월 15일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및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 ----- ----- -----행위, 중대한 인권
--	--

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침해-----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u> <u>요가 있는 경우</u> ② ~ ⑨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테러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 및 결의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¹⁾된 법임.

○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와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법인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²⁾할 수 있음.

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

- 현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등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자³⁾, ②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 등에 따라 지정⁴⁾한 자⁵⁾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하고 있음.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는 ①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②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⁶⁾를 받아야 함.

제가 필요한 경우

-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 5)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별첨에서는 총 1,066명의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음.(2026. 1. 14. 개정 기준)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

- 참고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허가 요건으로 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② 테러자금과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제규약 등은 아래와 같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국제규약 등 주요내용

구분	제목	성격 / 채택·발효일	우리나라 가입·비준일
가.	세계인권선언	선언 채택: 1948	비대상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규약) 채택: 1966 / 발효: 1976	○ (1990)
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규약) 채택: 1966 / 발효: 1976	○ (1990)
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협약) 채택: 1965 / 발효: 1969	○ (1978)
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조약(협약) 채택: 1978 / 발효: 1981	○ (1984)
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조약(협약) 채택: 1984 / 발효: 1987	○ (1995)
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협약) 채택: 1989 / 발효: 1990	○ (1991)
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약(협약) 채택: 2006 / 발효: 2008	○ (2008)
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조약(협약) 채택: 2006 / 발효: 2010	○ (2023)
차.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협약) 채택: 1948 / 발효: 1948	○ (1950)
카.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협약 및 그에 대한 1977년 6월 8일자 2개 추가의정서	[4개 협약] 조약(협약) 채택: 1949 / 발효: 1950 [2개 추가의정서] 조약(의정서) 채택: 1977 / 발효: 1978	○ [4개 협약](1966) [2개 추가의정서](1982)
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조약(협약) 채택: 1951 / 발효: 1954 조약(의정서) 채택: 1966 / 발효: 1967	○ (1992)
파.	2000년 11월 15일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및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조약(의정서) 채택: 2000 / 발효: 2003	○ (201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가 있음.

○ 먼저, 미국⁷⁾ 의회는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⁸⁾」(이하 “마그니츠키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인권침해 또는 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며, 미국 관할 내에 있는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당초 마그니츠키법은 6년간 효력⁹⁾이 있는 한시법이었으나, 미국 의회가 2022년 4월 통과시킨 ‘러시아·벨라루스 정상무역관계 정지법¹⁰⁾’에 따라 일몰 규정이 삭제되어 영구적으로 효력을 갖게되었음.

○ 다음으로, 유럽연합¹¹⁾ 각료이사회(이하 “유럽이사회”라 함)는 2020년 12월 7일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¹²⁾」를 채택¹³⁾하여, 유럽이사회

7)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2022. 10.

8)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Title XII, Subtitle F of P.L. 114-328; 22 U.S.C. §2656(2016.12.23. 발효).

9) 2022. 12. 까지 유효

10) H.R.7108 - Suspending Normal Trade Relations with Russia and Belarus Act / 117th Congress (2021-2022)

11) 국회입법조사처,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 2022. 10.

12)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13) 이 체제는 두 가지 입법인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결정 2020/1999」(COUNCIL DECISION (CFSP) 2020/1999 of December 2020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이하 ‘EU 결정’)과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규칙 2020/1998」(COUNCIL REGULATION (EU) 2020/1998 of December 2020 concerning

로 하여금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의 책임자, 조직 등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회원국들이 이들 제재대상자에 대해 자금 및 경제적 자원 동결, 입국 또는 통과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그 외에도 캐나다의 「부패한 외국의 공직자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¹⁴⁾」, 영국의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¹⁵⁾」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¹⁶⁾.

□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해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할 경우,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국회는 지난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가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의안 번호 2108338)을 의결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이하 ‘EU 규칙’)로 구성됨.

14) Justice for Victims of Corrupt Foreign Officials Act, 2017. 10.

15)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16) 통일연구권, 인권제재 연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합의, 2025.

○ 특히, 해외 주요국이 마그니츠키법 등과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자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인권 및 반부패 관련 주요국과의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¹⁷⁾도 있음.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제기구의 제재대상을 중심으로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를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여부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재하려는 것으로, 향후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단체 등이 속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또는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둘째, 현행 국내법상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제재는 현행 법상 조치 외에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수령 관련 제재¹⁸⁾도 존재하고, 마그니츠키법 등과 같은 출입국 제한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마그니츠키 인권제재 체제의 국제적 확산 동향 분석과 전망, 2021

18) 「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참고로,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수령 관련 제재 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¹⁹⁾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²⁰⁾이 제22대국회에서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셋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현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의 테러·핵 방지 의무 이행 목적으로 제정되어, 개정안과는 그 목적 및 취지상 성격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 및 인권 증진·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필요성과 독자제재로 인한 외교적 충돌 우려,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의안번호 2206721,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2024. 12. 29. / 의안번호 2217329,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2026. 3. 9.

20) 의안번호 2217070,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2026. 2. 26.

문 의 처
02)6788-5106